

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
審 査 報 告 書

2001. 8. 27  
의회운영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發議日字 : 2001. 8. 21
- 나. 發議者 : 박영웅 의원의 5인
- 다. 回附日字 : 2001. 8. 21
- 라. 上程日字 : 2001. 8. 27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朴英雄 議員)

가. 改正理由

- 본회의 개의중에 심사중인 의안과 청원, 기타 중요 관심사안 등에 대하여 의원들이 5분 범위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「5분 자유발언제」를 도입하여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主要骨子

- 「5분 자유발언」 조항을 신설하여 회의운영을 활성화 함(안 제38조의 2).
  -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에 30분 범위안에서 의원들이 심의중인 의안, 청원, 기타 중요 관심사항등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
  - 발언자는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
  - 발언자는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서면 신청

- 발언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.
- 의회 및 의원의 품위 손상,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불허가, 또는 발언 중지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근거하여 본회의 개의중에 심사중인 의안 및 기타 중요 관심사안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5분 범위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집행부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시기를 잃지 않고 지적하여 감시·감독을 보다 강화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등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언론이나 여론 등을 의식한 발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지방의회 의원은 자유발언이라 할 지라도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은점은 본 규칙이 개정되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
- 본 개정 규칙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규칙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### 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### 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224 호
의 결 년 월 일	2001. . . (제 호)

##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발 의 자	박영웅 의원외 5 인
발의년월일	2001. 8. 21.

# 서산시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2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1. 8. 21.

발 의 자 : 박영웅의원외 5 인

## □ 개정이유

- 본회의 개의중에 심사중인 의안과 청원, 기타 중요 관심사안 등에 대하여 의원들이 5분 범위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『5분 자유발언제』를 도입하여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『5분 자유발언』 조항을 신설하여 회의운영을 활성화 함.  
(안 제38조의 2)
  -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에 30분 범위안에서 의원들이 심의 중인 의안, 청원, 기타 중요 관심사항등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
  - 발언자는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
  - 발언자는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서면 신청
  - 발언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.
  - 의회 및 의원의 품위 손상,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불허가, 또는 발언 중지

## □ 참고사항

- 국회법 제105조
-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2

##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 2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 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,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.

③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5분 자유발언의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⑤ 의장은 발언요지를 접수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(신설)	<p>제38조의 2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회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 이라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재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,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.</p> <p>③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④ 5분 자유발언의 의원수와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</p> <p>⑤ 의장은 발언요지를 접수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</p>